

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로드맵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12. 28.(금) 총 3매(본문2, 붙임1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남영우, 사무관 육인수, 주무관 홍지란 ·☎ (044) 201-4750, 3767
	주택도시보증공사	담 당 자	·차장 이정철, 과장 박성환 ·☎ (051) 955-5743, 5718
보 도 일 시		2018년 12월 29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28(금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·하자 걱정 없이 안심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(3회)·사전 품질관리 강화

- 앞으로 단독·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, 곰팡이, 누수,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·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.
 - 단독·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(23%, '18년 주택유형별 재고[국토부통계])이 적지 않은 반면,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.
 - 특히,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,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.
- 이러한 단독·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·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.

○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(현장검사 3회)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또한, 보증 수수료율(0.771%)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·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.

-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%*인 1,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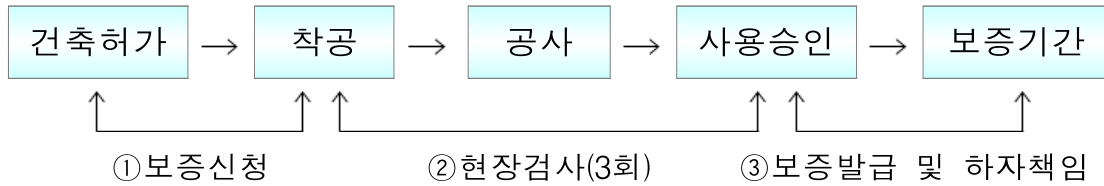
*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% 까지만 보증

○ 단독·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HUG)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“단독·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육인수 사무관(☎ 044-201-4750) 또는
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정철 차장(☎ 051-955-57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증대상	• 건축법 시행령의 구분기준에 따른 신축 단독·다가구주택	
보증신청인	• 시공사 (주택건설사업자, 건축업·토목건축업 등록자)	
보증채권자	• 단독·다가구주택 건축주	
보증내용	• 주택 준공 후 발생하는 보증대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지급 ※ HUG가 준공 前 현장검사(3회)를 통해 사전 품질관리 수행 * (검사시점) 기초 철근배근 완료시, 지붕층 철근배근 완료시, 사용승인에정일 전 1~5일]	
보증신청 시기	• 건축허가(건축신고) 이후 착공신고 이전	
보증금액	• 총 건축비의 5%	
보증기간	• 보증서발급 ~ 약정 보증기간 만료 (최대 5년 이내 공종별 相異)	
	보증기간	세부공종 (품질보증 내용)
	1년	미장, 타일, 도장, 창호공사, 실내의장, 보일러 설치
	2년	토목공사,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, 석공사, 조적공사 (비내력벽), 철물, 급배수·공동구·지하저수조·냉난방·환기·공기조화·자동제어·가스·배연설비, 포장공사
	3년	지붕, 방수, 철근콘크리트(기둥 및 내력벽 등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제외),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
5년	건축물 중 주요구조부(기둥 및 내력벽 등)	
보증료	• 보증금액 × 보증기간(年) × 보증료율 * 보증료율 : 연 0.771%	